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관련 1255 |
|----------|------------|

제안연월일 : 2020년 2월 26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부칙 중 시행일을 상위법의 시행일과 맞추기 위해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부칙을 “이 조례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”로 수정함(안 부칙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을 “이 조례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”로 수정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| 원안 | 수정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부 칙 이 조례는 <u>공포한 날</u> 부터 시행한다. | 부 칙 이 조례는 <u>2020년 12월 11일</u> 부터 시행한다. |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·절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6조(실태조사 등)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| <p>제6조(실태조사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<u>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6조의2(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·절차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<u>2020년 12월 11일부터</u> 시행한다.</p> |